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권영목 소유물건(2025타경15864)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박주인

감정평가서번호: JM-2507-23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민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유 기 용

감정평가액	일십이억사천구백만원정(₩1,249,000,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 사법보좌관 박주인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권영목 (2025타경15864)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7.24	2025.07.23 ~ 2025.07.24	2025.07.2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3개호 이	구분건물	3개호 하 여	-	1,249,000,000 백
	합 계					₩1,24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PAGE : 1

I. 감정평가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소재 "예산군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세강메디컬빌딩” 제1층 제101호外로서, 권영목 소유물(2025타경15864)에 대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07월 24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평가대상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07.23.~2025.07.24.이고,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4. 기타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도시계획사항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

나.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호별 구분 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용중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나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PAGE : 2

건물번호표지가 없는 상태인 바,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물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면 및 실지 조사 시 위치와 임차인 등으로부터 탐문조사한 면적·이용상황을 토대로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였으니, 추후 경매진행시 경매진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다.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구분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식

(1)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의 3방식이란, 대상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가)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대상물건이 “얼마의 비용을 투입하여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비용성에 근거하여,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나)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대상물건이 “얼마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라는 시장성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을 이용하여 “얼마의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수익성에 근거하여, 투자 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에서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결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주된 방법

본건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2)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다른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구분건물의 특성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였음.

(3) 그 밖의 사항

본건은 동유형 구분건물의 가격수준, 인근선례, 임대수준, 기타 가격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합리성 및 객관성을 비교·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라.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물과 적정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가. 주된 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1) 대상이 속한 부동산의 기본적 사항

구 분	내 용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1-2 [도로명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84]				
건물명, 층	“세강메디컬빌딩” 제1층				
공부상 용도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2017.09.01	
면 적	호수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대지권비율
기호 1	제101호	48	27.7083	75.7083	12.39 / 1,355
기호 2	제102호	40.8	23.5521	64.3521	10.53 / 1,355
기호 3	제103호	40.8	23.5521	64.3521	10.53 / 1,355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구분	소재지 (건물명 및 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거래가격/평가가격 (천원)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자료출처	거래시점/기준시점 사용승인일
①	매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〇〇4 10〇호	91.58	29.4789	600,000	6,552,000	실거래 정보	2021.10.28
								2019.05.22
②	매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〇〇1 〇〇9동 10〇호	40.9211	28.0149	220,000	5,376,000	실거래 정보	2023.07.25
								2017.08.0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및 그 이유

본건 인근지역내 유사 거래사례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하고 기준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 ①>을 선정함.

(3) 사정보정

상기의 거래사례는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치는 없는 것으로 결정함. (1.000)

(4) 시점수정

(가) 적용 기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내 「충청남도 상업용(집합상가용) 부동산 자본수익률」(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건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 충청남도 상업용(집합상가용) 부동산 자본수익률

구 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충청남도	0.41	0.33	0.41	0.3	-0.15	-0.31	0.23	0.02

구 분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충청남도	-0.32	-0.12	0.0	-0.1	-0.19	-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점수정치 산출

기 간	변동률 (%)	비 고
2021.10.28. ~ 2025.07.24.	-0.298	$(1+0.0041*65/92)*(1+0.0033)*(1+0.0041)*(1+0.003)*(1-0.0015)*(1-0.0031)*(1+0.0023)*(1+0.0002)*(1-0.0032)*(1-0.0012)*(1+0)*(1-0.001)*(1-0.0019)*(1-0.003)*(1-0.003*115/90) \approx 0.99702$

※ 2025년 2분기 이후의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 상태로 2025년 1분기의 자본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연장 적용하였는 바, 시점수정치는 0.99702(-0.298%) 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기호 1,2 / 사례 ①

구 분		격차율	비 고
조건	세 항 목		
단지 외부 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1.25	본건은 사례에 비하여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의 성숙도 등 단지외부요인에서 우세함.
	대중교통의 편의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 (가로폭, 구조 등) 등		
단지 내부 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1.15	본건이 사례에 비하여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단지내부요인에서 우세함.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1.02	본건이 사례에 비하여 전유부분의 면적 등 호별요인에서 우세함.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본건과 사례는 제반 기타요인 대체로 대등함.
누 계		1.466	1.25 x 1.15 x 1.02 x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기호 3 / 사례 ①

조건	구 분	격차율	비 고
	세 항 목		
단지 외부 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1.25	본건은 사례에 비하여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의 성숙도 등 단지외부요인에서 우세함.
	대중교통의 편의성 (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 (가로폭, 구조 등) 등		
단지 내부 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1.15	본건이 사례에 비하여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단지내부요인에서 우세함.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1.04	본건이 사례에 비하여 전유부분의 면적 등 호별요인에서 우세함.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본건과 사례는 제반 기타요인 대체로 대등함.
누 계		1.495	1.25 x 1.15 x 1.04 x 1.00

(6)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

기호	사례가격 (천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전유면적 비교(m ²)	산출가격 (천원)	결정가격 (천원)
1	600,000	1.000	0.99702	1.466	48/ 91.58	459,652	460,000
2	600,000	1.000	0.99702	1.466	40.8/ 91.58	390,704	391,000
3	600,000	1.000	0.99702	1.495	40.8/ 91.58	398,433	39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산출내역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다른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구분건물의 특성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였음.

다. 시산가액 조정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주된 방법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는 바, 주된 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3. 그 밖의 사항

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탐문 조사

본건 인근 유사 근린생활시설은 층, 향, 관리상태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며, 전유면적당 약 8,500,000원/㎡ ~ 10,000,000원/㎡ 수준임.

나. 인근 평가사례

[자료출처 : KAPA HUB PLUS]

기호	구분	소재지 (건물명 및 호수)	전유 면적 (㎡)	대지권 면적 (㎡)	평가가격 (천원)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자료 출처	기준시점
㉠	경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 ○○○○○빌딩 10○호	40.4	10.42	386,000	9,554,455	협회 전례	2024.08.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와 대상부동산의 제반 특성, 최근 부동산 가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1	101	48	9,583,333	460,000,000
2	102	40.8	9,583,333	391,000,000
3	103	40.8	9,754,901	398,000,000
계				1,249,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1-2 세강 메디컬 빌딩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8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84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1-2	대	일반상업지역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01호 (1) 소유권 ----- 대지권	1,355 48 12.39 1,355	 48 12.39 1,355	460,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포함
2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02호 (1) 소유권 ----- 대지권	40.8 10.53 1,355	40.8 10.53 1,355	391,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포함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92,000,000 368,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3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03호 (1) 소유권 ----- 대지권	40.8	40.8	배분내역 토 지 : 78,200,000 건 물 : 312,800,000 398,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포함
					10.53	10.53		
					1,355	1,355		
							토지·건물 토 지 : 79,600,000 건 물 : 318,400,000	
합 계				이 하	여	백	₩1,249,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소재 "예산군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관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접한 예산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8층 중 제1층 제101호외로서,
- 외 벽: 석재붙임 등
- 내 벽: 인테리어 등
- 창 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기호 1~3 공히 경계구분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생명나무 요양원 직원식당"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5) 설비내역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부정형태로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24-04-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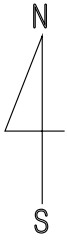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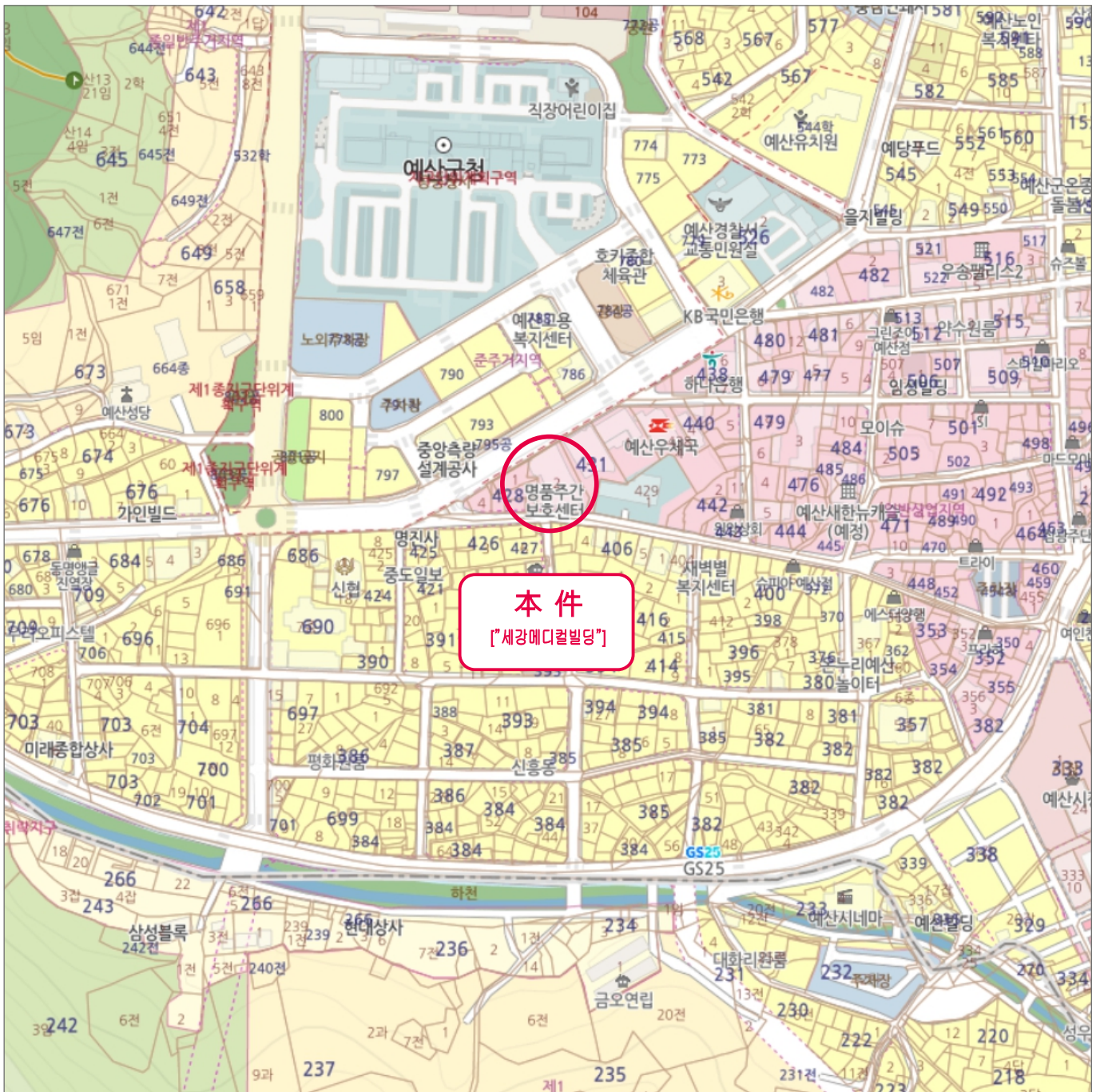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호별 구분 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용중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나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없는 상태인 바,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물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면 및 실지 조사시 위치와 임차인 등으로부터 탐문조사한 면적·이용상황을 토대로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였으니, 추후 경매진행시 경매진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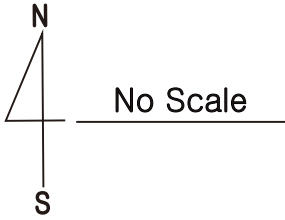
위 치 도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1-2 세강메디컬빌딩 제1층 제101호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84]



호 별 배 치 도



本 件 : "세강메디컬빌딩" 제1층 제101호 ~제103호([기호1]~[기호3])







